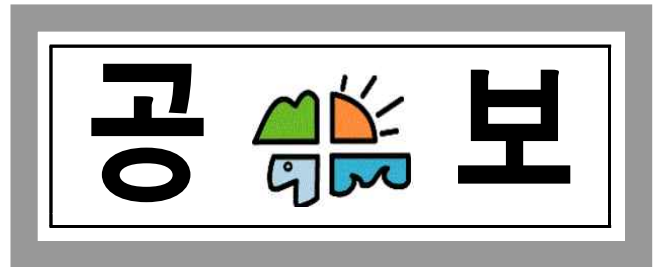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60호 2023년 4월 14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6

공 고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토지 등의 출입 공고 8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0

입법예고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개설 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665m	-	B=10m, L=440m	
	소로1-87호선	B=10m, L=180m	-	B=10m, L=15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대신자산신탁(주) 대표 김송규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03. 30.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440m	(당초) 5,347㎡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변경) 5,225㎡	
	소로1-87호선	B=10m, L=158m	2,230㎡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1-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장사동	431-15	임	33	-	33	33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당초
1	장사동	431-15	임	33	-	33	33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변경
2	"	431-13	임	21	-	21	21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당초
2	"	431-13	임	21	-	21	21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변경
3	"	산280-9	임	36	19	17	36	속초시		당초
3	"	산280-9	임	36	19	17	36	속초시		변경
4	"	431-2	철	3	3	-	3	국(국토교통부)		당초
4	"	431-2	철	3	3	-	3	국(국토교통부)		변경
5	"	431-12	전	39	14	25	39	국(기획재정부)		당초
5	"	431-12	전	39	14	25	39	국(기획재정부)		변경
6	"	431-14	임	16	-	16	16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당초
6	"	431-14	임		-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변경
7	"	432-4	전	2	-	2	2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당초
7	"	432-4	전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변경
8	"	산280-10	철	11	5	6	11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당초
8	"	산280-10	철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변경
9	"	산280-11	철	152	128	24	152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당초
9	"	산280-12	철	128	128	-	128	대신자산신탁(주)	속초시 영랑동 131-2*	변경
10	"	437-32	철	215	147	68	215	한*경	속초시 영랑동 131-2*	당초
10	"	437-38	철	146	146	-	146	대신자산신탁(주)	속초시 영랑동 131-2*	변경
11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당초
11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변경
12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교통부)		당초
12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교통부)		변경
13	"	437-36	철	105	-	105	105	국(기획재정부)		당초
13	"	437-36	철	105	-	105	105	국(기획재정부)		변경
14	장사동	437-33	철	60	-	60	60	국(기획재정부)		당초
14	장사동	437-33	철	60	-	60	60	국(기획재정부)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5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교통부)		당초
15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교통부)		변경
16	"	437-34	철	191	-	191	191	국(기획재정부)		당초
16	"	437-34	철	191	-	191	191	국(기획재정부)		변경
17	"	437-35	철	651	643	8	651	국(국토교통부)		당초
17	"	437-35	철	651	643	8	651	국(국토교통부)		변경
18	"	437-29	철	1,058	746	312	1,058	국(국토교통부)		당초
18	"	437-29	철	1,058	746	312	1,058	국(국토교통부)		변경
19	"	517-37	도	73	55	-	55	국(국토교통부)		당초
19	"	517-37	도	73	55	-	55	국(국토교통부)		변경
20	"	산268-7	철	9	9	-	9	국(국토교통부)		당초
20	"	산268-7	철	9	9	-	9	국(국토교통부)		변경
21	"	437-22	잡	11	11	-	11	국(국토교통부)		당초
21	"	437-22	잡	11	11	-	11	국(국토교통부)		변경
계				5,365	4,459	888	5,347			당초
계				5,243	4,453	772	5,225			변경

■ 토지조서(소로1-87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장사동	517-37	도	73	18	-	18	국(국토교통부)		
2	"	517-60	도	276	276	-	276	국(국토교통부)		
3	"	457-9	대	9	9	-	9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4	"	457-8	답	46	36	10	46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5	장사동	455-12	원	715	675	40	715	국(기획재정부)		
6	"	산313-24	유	50	50	-	50	국(국토교통부)		
7	"	429-23	임	21	21	-	21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8	"	453-14	원	12	12	-	12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9	"	산268-8	철	13	13	-	13	국(국토교통부)		
10	"	산268-15	임	761	537	224	761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1	"	산268-16	임	97	82	15	97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2	"	456-1	전	212	194	18	212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계				2,285	1,923	307	2,230			
계				2,285	1,923	307	2,230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변경등록 미실시한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월 4월 14일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2023. 4. 14. ~ 2023. 5. 13.(1개월)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 공보
3.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4.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기구 명칭	기구의 종류	내용	비고
08-08-2014-0055 (MB-01-1324)	아지트4호	모터보트(선외기)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09-02-2012-0002 (55-MB-1308)	속초호	모터보트(선외기)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5.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1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토지 등의 출입 공고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추진중인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등의 출입을 공고합니다.

2023. 4. 14.

속 초 시 장

- 아 래 -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 사 업 위 치 : 속초시 조양동 891번지 일원
- 사 업 기 간 : 2023. 1. ~ 2027. 2. 28.
- 사 업 량 : 25학급(특수 1학급 포함)
- 사업 시행자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 사업 시행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6(교동)

나. 출입목적 : 편입토지 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공사(설계) 관련

다.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속초시 조양동 891번지 일원(붙임조서 참조)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라.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마.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시까지

바. 문 의 처 :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예산부서 담당자 : 033-639-6072)

사. 기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

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상 토지의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04. 13.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04. 14. ~ 2023. 04. 28.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3.04.13.)	김○옥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건축물 부존재	동명동 522-4	벽돌조/ 점포 56.24㎡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과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 향후 장학금 지급시 생활비 항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추가 및 정비(안 제2조, 안 제16조)
 - 나. 조성목표액 증액(안 제3조)
 - 다.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교육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교육청소년팀)
- 2) 연락처 : 033-639-2049 (FAX 033-639-2059)
- 3) 전자메일 : youjini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033-639-20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50억원”을 “100억 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3년 11월 12일”을 “2028년 11월 12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장학금”을 “등록금”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장학금”을 “등록금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u>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과</u> <u>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u> <u>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u> <u>말한다.</u>
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 (생략)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u>50억원</u> 으로 하며, 시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도달할 때 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100억 원</u> ----- ----- ----- ----- -----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u>2023년 11월 12일까지</u> 로 한다. ② (생략)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 ----- <u>2028년 1</u> <u>1월 12일</u>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다른 법령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 ----- ----- -----

에 따라 등록금 및 수업료 등
(이하 “등록금등” 으로 한다)
을 전액 면제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
을 수 없다. 다만, 등록금등을
일부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
는 면제 받은 액수를 제외한 등
록금 등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등록금등 -----
----- . -----

----- 등록금등 -----
----- .